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8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김성원·송석준·이인선

안철수 • 박충권 • 구자근

김선교 · 김위상 · 정희용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서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한편, 특정한 경우 상속 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부양의무를 해대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부양의무를 해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공동상속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등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4조의2 신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①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 상속인에 대하여 제913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해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 자, 제100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청구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경우
 - 3.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② 피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제1068 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 가 제1항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제1항의 사유의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⑥ 상속개시 후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①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상속재 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상속권 상실선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신・구조문대비표

지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①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될 사람 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제913조 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해대하 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 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1000 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 람,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 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 다)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 위를 한 경우 3.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확대하거나 그 밖 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	현 행	개 정 안
<u>수</u>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①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제913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해대하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100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청구에 따라 상속인이 될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한정한다)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한경우 3.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직계혈족을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한 경

- ② 피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표시한 경우에 는 유언집행자가 제1항의 상속 권 상실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실 서라이 이를 청구할수 있다.
-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제1항의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⑥ 상속개시 후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 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①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상속재산의 보존 및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

 한다.